##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8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이해식・김원이・박상혁

박정현 · 서영교 · 위성곤

유준병·이기헌·한병도

황명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법률 제 호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정을"을 "위탁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을 "위탁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 4항에"를 "제6항에"로. "지정"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 의 제4항) 중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을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으로 한 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보 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3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취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2
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장애인</u>	<u>장애인가</u>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u>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u>
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u>있다</u> .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	
<u>다</u> .	
<u>&lt;신 설&gt;</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
	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
	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u>있다.</u>
<u>&lt;신 설&gt;</u>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가족지
	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
	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가
	<u>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u>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 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지정</u> 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u>제4항에</u> 따른 <u>지정</u>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생 략)
-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 <u>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

     기관의 지정 취소
  - 2. ~ 5. (생략)

<u>⑤</u>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u>위</u>
<u>탁을</u>
1
<u>위탁을</u>
2. <u>제6항에위탁</u>
3.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장애
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제83조의2(청문)
1.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
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취소
2. ~ 5. (현행과 같음)